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3 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 강기윤·성일종·윤영석

구자근 • 이종성 • 박덕흠

엄태영 · 김석기 · 안병길

황보승희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각종 문화·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.

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, 기획사,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 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3(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4조의3(대규모 행사에서의 응
	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)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
	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
	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
	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
	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
	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.